

# 화재보험 요율의 적용방법

-보험계약자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설명한 보험의 일반 상식은 보험계약자 내지는 피보험자가 필히 알아 두어야 할 기초상식이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여야 적절한 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으며 이재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3. 화재보험요율 산출요령

#### 가. 물건별에 의한 요율의 종류

모든 화재보험은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의 4가지 종류에 의하여 요율이 확정되기 때문에 각 물건별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만 적절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      |   |      |
|------|---|------|
| 화재보험 | } | 주택요율 |
|      |   | 일반요율 |
|      |   | 창고요율 |
|      |   | 공장요율 |

#### (1) 주택화재보험요율

주택화재보험요율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 ㉠ 단독주택



윤 동 혁  
〈본협회 업무부 차장〉

-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 ㉢ 연립주택(연동건물), 중층 건물 및 아파트로서 각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 (2) 일반물건요율

일반물건요율은 주택화재보험요율, 창고물건요율 및 공장물건요율을 적용하는 물건을 제외한 물건에 적용한다. 다만 일반물건과 주택물건의 구분은 같은 구내라도 하나의 건물단위로 구분한

다. 중요대상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과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 ㉤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동력 설비의 합계가 20Kw 미만, 전력설비의 합계가 40Kw 미만, 작업인원이 늘 20인 미만인 작업장의 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 ㉥ 앞의 각항의 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에 수용하는 동산, 설치기계 및 야적의 동산.

#### (3) 창고물건요율

이 요율은 다음의 건물 및 이에 수용되는 보관화물과 창고구내에 있는 야적의 보관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 농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건물로서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화물보관의 목적에 쓰이는 것.
- ㉧ 수산협동조합이 점유하는 건물로서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화물보관의 목적에 쓰이는 것.

(4) 공장물건요율

이 요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를 포함한다)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야적의 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주택물건의 기본요율표)

| 급별<br>등지별 | 1급    | 2급    | 3급    | 4급    |
|-----------|-------|-------|-------|-------|
| 1등지       | 0.017 | 0.027 | 0.044 | 0.067 |
| 2등지       | 0.021 | 0.033 | 0.053 | 0.082 |
| 3등지       | 0.024 | 0.039 | 0.063 | 0.097 |
| 4등지       | 0.028 | 0.045 | 0.073 | 0.112 |

(상기숫자는 1년간의 보험료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동력설비의 합계가 20Kw 이상인 것.

㉡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전력설비의 합계가 40Kw 이상인 것.

㉢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인원이 늘 20인 이상인 것.

나. 화재보험요율의 산식

기본요율+할증·할인요율+특약요율=적용요율

(1) 기본요율

공장물건요율을 제외한 주택·일반·창고요율은 대한민국 전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지역별로 기본요율을 정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등지별이라 한다. 급별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4가지로 구분 적용토록 하였다. 공장물건에서 급별에 의한 요율은 주택·일반·창고요율과 동일하나 공장내에서 작업을 하는 유형

에 따라 기본요율이 산출되므로 다른 주택·일반·창고요율과 비교하여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한가지 예로 주택물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보험가입물건)이 철근콘크리트 스타브인 경우의 건물은 1급에 해당되며 목조건물은 4급이 된다. 참고로 화재보험요율서에서 주택물건의 기본요율은 다음과 같다.

예) 여의도 소재 APT인 경우의 요율은?

(건물구조가 1급인 경우)

화재보험요율서의 전국등지별 표를 보면 여의도동은 1등지이므로 기본요율은 0.017(1등지1급)로 산출된다.

(2) 할증·할인요율

기본요율 이외에 건물의 구조, 직업, 작업 또는 위험품 등의 사용여부에 따라 할증요율이 있으며, 소화설비, 인접건물과의 공지거리, 보험가입금액 20억을 초과하는 계약 등에 따라 할인요율이 있다.

이 할증·할인요율은 기본요율에 소정의 할증·할인요율을 가감하여 실제 적용할 요율을 산출한다.

예1) 할증요율의 경우

1급구조건물의 호텔: 0.045(직업할증요율)

예2) 할인요율의 경우

1급구조건물에서 소정의 방화문이 있는 경우: 기본요율의 10%(방화문 할인요율)

註)소화설비할인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건물 및 수용동산에 대하여 소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특약요율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은 화재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여 주므로, 화재 이외의 사고 즉 도난이나 풍수재사고, 전기사고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특약요율에 해당하는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요율의 종류를 몇 가지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도난위험부담 특약요율
- 구내폭발손해부담 특약요율
- 전기위험부담 특약요율
- 지진위험부담 특약요율
- 유리손해부담 특약요율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부담 특약요율
- 야외간판 풍수재위험부담 특약요율 등.

이상은 각 물건별로 요율적용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건물구조급수의 판별, 복합건물에 있어서의 요율산출, 할증·할인율의 계산, 중도해약시의 보험료계산 방법 등 적용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호부터는 당협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실제의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